

의료관광 대상 주요국가, 코로나-19에 대한 조치 현황

2021. 1. 15 (금) 기준

* 아래 조치 현황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대응 조치는 해당 출처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hina

* 출처 :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 87,844명 (사망 4,635명) 	사망률 : 5.3%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관련 조치(중국 내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8.)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4.1.)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 ○ (8.5.)한국인의 경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 ○ (9.28.)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의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는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 :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비자신청 :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입국관련 조치(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전시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기존 지정 시설격리 2주→ 지정 시설격리 2주+준자가격리 1주 - 변이 바이러스 발생 해당 국가(영국 등) 입국자 : 입국 후 1-4-7-14-21일째 되는 날 PCR 검사 실시 -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외 국가 입국자 : 입국 후 1-7-14-21일째 되는 날 PCR 검사 실시 ▶ 입국관련 조치(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홍콩 비거주자의 입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22~)영국 (12.25~)남아공 21일 이내 2시간 이상 머문 홍콩 거주자 입국 금지 ※ 홍콩 거주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 (12.25.이후)입국자 검사 결과 확인 후 정부지정호텔에 21일 격리 및 전자손목밴드 착용(격리중 11일째 검사/격리후 19,20일째 검사) - (12.2-12.24)입국자 14일 격리 후 7일 추가 격리 및 도착 19,20일째 검사 결과 확인 후 격리 해제 - 선박 및 항공 승무원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및 입국 후 타액 샘플 제출 -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탑승 전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및 21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 ○ (6.1.) 홍콩 국제공항의 경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절차 없는 24시간 내 환승에 한함 - 홍콩 경우 중국 출입국 및 자가환승 불가 -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이동, 승객 간 1.5m 거리 유지 ▶ 입국관련 조치(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9.)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포함) ○ (4.23) 대만공항 내 항공기 환승 금지 ○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 (1.1.) 대만 내 환승금지 및 거류증 미소지 외국인의 대만 입국 금지 	<p>* 출처 및 참고링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upload/cntnts/cn-zh/visa_new.pdf 2. 각 지역 정부망 http://www.gov.cn/ 3. Bendibao(本地宝) http://heb.bendibao.com/news/202049/54293.shtm 4. 대만위생복지질병관리본부 https://www.cdc.gov.tw/ 5. 대만외교부 영사국 https://www.boca.gov.tw/mp-1.html 6.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 https://www.visaforchina.org 7.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kr.china-embassy.org/kor 8. 건강 OR코드 관련 주한중국 대사관 지정 웹사이트 https://hrhk.cs.mfa.gov.cn/H5/ 9. 입국 검역 강화 관련 내용 kr.china-embassy.org/kor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운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12월부터 입국승객 및 환승객에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제출 의무 ○ (중국) (12.1.)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 전 2일 이내 코로나-19핵산 검사(PCR)와 혈청 IgM항체 검사 필수 - 2가지 음성 증명서 주한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제출 - "HS" 또는 "HDS" 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 신청 뒤 탑승 가능 ○ (중국)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구 분	내 용	비 고
<p>코로나-19 현황</p>	<p>● 확진자 : 304,140명 (사망 4,059명)</p>	<p>사망률 : 1.3%</p>
<p>대응조치</p>	<p>▶ 코로나 대책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부터 2.7까지 1도3현 대상으로 2차 긴급사태 선언 (도쿄도,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 등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 - 오후 8시 이후 외출자제 - 직장 내 출근자수 70% 감소 지향 - 감염 리스크가 높은 활동 제한 <p>▶ 사증발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무사증 제도 임시 중단 연장조치 (3.7~당분간) ○ (사증 제한) 12.28~2021.1월말까지 모든 국가-지역 입국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주한공관에서 발급된 사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12.28이후에도 일본 입국 인정 - 긴급인도안건, 워킹홀리데이 등의 사증 입국 인정 - 레지던스트랙 및 비지니스트랙 변함없이 운용 ※ 단,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체류 이력이 있는 자 입국 금지 <p>▶ 입국관련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부터 한국 등 9개국 대상 입국금지 해제 및 감염증위 정보 단계 하향(3단계→2단계) 조정(10.30.) ○ 한국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14일 간 건강 모니터링 - 민간의료보험 가입 - 입국시「서약서」 및 「질문표」제출 - 입국 후 14일간 자택 등 장소에서 대기 및 대중교통 이용 불가 ○ 2.7까지 11개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입국 금지 (베트남, 한국, 중국, 대만,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싱가포르)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도 중단 <p>▶ 자가격리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스스로 자택 혹은 시설, 교통(자차, 렌트카 등) 확보 ○ 입국 후 대중교통 사용 금지 ○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건강상태 보고 ○ 비용 모두 본인 부담 	<p>주한일본대사관 : 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ja/index.html</p> <p>주일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jp-ja/index.do</p> <p>위생노동성 : https://www.mhlw.go.jp/index.html</p>
<p>기 타</p>	<p>▶ 항공운항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공항, 간사이공항, 주부국제공항으로 한정 ○ 입국 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 환승 가능 	<p>한-일 항공편 참고 : https://www.tokutenryoko.com/service/airticket/6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A항공 : 2월말까지 비운항 - JAL항공 : 2월말까지 비운항

구 분	내 용	비 고
<p>코로나-19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 시 아) 확진자 : 3,434,934명 (사망 62,463명) ● 카자흐스탄) 확진자 : 211,901명 (사망 2,881명) ● 우즈베키스탄) 확진자 : 77,716명 (사망 618명) 	<p>사망률 1.8% 사망률 1.4% 사망률 0.8%</p>
<p>대응조치</p>	<p>▶ 러시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한-러간 직항 항공편에 대해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 (제3국 경유 입국 및 육로 입국은 불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 12.29 백신 접종자에게면역 여권 발행 예정 면역 여권은 2021.1월부터 러시아 정부서비스 종합포털에서 이용 가능 <p>▶ 카자흐스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입국 시 최장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시 입국, 환승 제한 규정 폐지(9.18.) ○ 10.6.부터 출발 국가를 불문하고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미소지 외국인의 입국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국적자 및 영주권자 음성 확인서 미소지시, 입국 즉시 PCR 검사를 위해 7일간 시설 격리 (11.1 시행) - 만 5세 이하인 자는 음성 확인서 소지 면제 (1.27 시행) ○ 한국인 1회 입국 시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허용 총 기간은 한-카 사증면제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180일 중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7.3부터 중단된 비자발급 업무 재개 (C-3-1, C-3-4, C-3-9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검진 목적 의료관광 비자(C-3-3) 발급 임시중단 ○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 시 입국, 환승 제한 규정 폐지(9.18) <p>▶ 우즈베키스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편 방역등급상 황색 국가(한국 포함)에서 출발하는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R음성 확인서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어본) 제출 - 또는 입국심사장에서 신속진단키트 검사(비용 자부담) - 격리동의서 제출 - 거주등록주소지 혹은 지정호텔에서 2주간 자가격리(12.1.) ○ 12.21.-1.10. 기간 동안 최근 2주 내 영국,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네덜란드, 남아공 방문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 입국 금지 ○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및 거주 무국적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 격리 <p>▶ 사증발급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9부터 일반여권 소지 우리 국민의 30일무비자 입국이 가능 - 7.28부터 비자신청 업무 재개 (결혼이민(F6), 의료관광(C-3-3)) (단, 중증 외국인환자로 의료진 판단에 따른 진료 연속성,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우즈베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해서 유효한 사증을 소지해야 하며, 단기 방문해야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을 통해 개별 허가를 받은 후 입국 가능 	<p>* 출처 및 참고링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알마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kz-almaty-ko/brd/m_8315/view.do?seq=133757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uz-ko/brd/m_8555/view.do?seq=134689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p>기 타</p>	<p>▶ 항공 운항 관련 등 (러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한 항 공 : KE923/4(인천↔모스크바) ~ 2.28 (금) 운항 <p>▶ 항공 운항 관련 등 (카자흐스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어 아스타나 항공 : 7.1부터 월요일, 금요일 - 아시아나 항공 : OZ577(인천→알마티) ~ 2021/2/28 주 1회(수) 운항 OZ578(알마티→인천) ~ 2021/3/1 주 1회(목) 운항 <p>▶ 항공 운항 관련 등 (우즈베키스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나 항공 : OZ573 (인천→타슈켄트) ~ 2021/1/4 주 1회(월) 운항 OZ574 (타슈켄트→인천) 2021/1/5 ~ 2/28 주 1회(수) 운항 - 대 한 항 공 : 12.1~12.31 비운항 <p>▶ 특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북카자흐스탄 지역 코로나19 경보 황색으로 하향조정 ○ (우즈베키스탄) 자국민에게 터키 여행 자제권고 발령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 : 1,521명 (사망 35명) 	사망률 : 2.3%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발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기준) ▶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 중단(3.17.기준) ○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입국거부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 공무 목적 방문 ○ 주요 대외행사 참석의 경우(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 ○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 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 (출처: 외교부 홈페이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운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한 항 공 : KE679 (인천-하노이) ~ 2.28까지 비운항 KE680 (하노이-인천) ~ 2.28까지 매일 운항 - 아시아나 항공 : OZ733 (인천→하노이) ~ 2021/1/31 비운항 2021/2/1 ~ 2021/2/28 주5회 운항 OZ734 (하노이→인천) ~ 2021/2/28 주5회 운항 ▶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대한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 중 	-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Thailand

구 분	내 용	비 고
코로나-19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환자 : 10,991명 (사망 67명) ※ 태국 비상사태 재연장 (2021.2.28.까지) 	사망률 : 0.6%
대응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증발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2020.4.13.부터) * (12.17. 기준)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 대표단, 필수 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태국 영주권자,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코로나19를 제외한 의료 목적 방문 장기 거주 비자 취득 희망 외국인, Thailand Elite Card/Thailand Privilege Card 소지 외국인, APEC Card 소지 한국인, 태국 투자 또는 사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영화 또는 방송 촬영을 희망하는 외국인, 무사증제도 이용 외국인, Tourist Visa(6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Special Tourist Visa(90일 체류 가능) 은퇴 후 정부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운동 선수 ▶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1.부터 제한적 입국 허용 ○ 입국 전 :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주재 발행 입국허가증 (COE), 비행적합 건강증명서,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방식), 10만불 이상의 치료비 (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 출발 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 입국 후 : 입국 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필수접촉서류 제출 모니터링 시스템/어플리케이션 설치, 정부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관련 규정 준수, RT-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 	외교부 : http://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7949&pagenum=1&st=title&text= 태국 입국 가능 외국인 유형 : http://overseas.mofa.go.kr/th-ko/brd/m_3246/view.do?seq=128039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운항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한 항 공 : KE653 (인천→방콕) 화목토 운항 KE654 (방콕→인천) 매일 운항 - 아시아나 항공 : OZ741 (인천→방콕) ~ 2021/2/28 주 2회(화,금) 운항 OZ742 (방콕→인천) ~ 2021/2/28 주 2회(수,토) 운항 	